

#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

지 성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서론

2011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군사독재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뛰어넘어 개발 잠재력이 크면서도 외부의 접근이 없었던 처녀지로서의 투자가치에 대한 관심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가치와 발전 잠재력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즉,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세계 거대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라오스와 태국 등을 포함한 아세안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의 다양한 기후대는 농업 발전에 유리하고, 한반도 3.5배 크기의 넓은 국토와 6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 내수시장 발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는 외국기업 진출을 위한 유리한 요건이다. 이에 미얀마는 인도차이나의 잠재적 경제허브 혹은 아시아의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2011년 군사정권 퇴진을 계기로 경제 제재를 풀고 미얀마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對)미얀마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

\* 본 내용은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의 제정을 번역하여 재구성하였음(dongsimjst@krei.re.kr 02-3299-4304).

국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얀마에 대한 투자에 아낌이 없다. 최근 연간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2013년 초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140억 달러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미얀마 최대 채권국인 일본도 부채 탕감,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수단을 통한 관계 개선으로 미얀마 진출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군사독재를 겪었다는 동질적 역사경험을 공유한 가운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성공적 경제발전 모델을 보유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매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얀마 누적 투자액은 중국의 1/3 수준이고, ODA 규모도 약 600만 달러(2012년 기준)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GDP 비중, 노동력 분포, 수출 등의 지표를 살펴보면, 농업은 미얀마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다양한 농업생태환경과 풍부한 토지자원을 보유함으로써 농업분야 개발 잠재력도 대단히 크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미얀마 농업분야에 이미 진출했거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 농업관개부(MOAI)와 농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농업 관련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 현황 및 여건에 대한 고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2. 미얀마 농업 현황

### 2.1. 일반 현황

농업이 미얀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8%(수산업 포함)로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약 61.2%의 노동력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부문도 상당부분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된 43,239개 개인사업체 중에서 35,827개가 식품산업이다. 2010/11년 전체 수출액 가운데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이고,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25~30%에 달한다.

농업이 미얀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과 기술 투입 및 구조 전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공업과 서비스부문에 비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자료에 따르면, 2010/11년 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4.1%로

각각 6.5%와 6.3%를 나타낸 공업과 서비스부문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GDP 성장률(5.5%)에도 미치지 못했다. 농업부문 GDP 가운데 농산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 주요 아시아 개도국의 농업 GDP 비중

			단위 %				
국가	1980	1990	2011	국가	1980	1990	2011
중국	30.1	27.0	10.1	인도	38.1	31.0	17.2
태국	23.2	12.5	10.9(*)	베트남	50.0	38.7	22.0
말레이시아	22.9	15.2	12.0	라오스	n.a.	61.2	30.3(*)
필리핀	25.1	21.9	12.8	미얀마	46.5	57.3	34.7
인도네시아	24.8	19.4	14.7	캄보디아	n.a.	55.6	36.7

주\*): 2010년 통계치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 2.2. 주요 작물 연앙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작물은 쌀, 두류, 유지작물이며, 2009/10년 전체 재배면적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5%, 23%, 19%이다. 1990년 이후 이들 작물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토지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두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생산성이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의 경우 2000년 ha당 3.4톤이었던 단위생산량이 최근 4.1톤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6.6톤), 베트남(5.2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얀마의 주곡인 쌀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의 가격 통제와 무역 제한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였고, 1990년대 들어 다시 생산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쌀 재배면적은 1990/91년 480만 ha에서 2010/11년 800만 ha로 증가하였다. 2010/11년 생산량(조곡 기준)과 단수는 각각 3,250만 톤과 3.9톤/ha으로 2006~2011년 기간 쌀 연평균 잉여량은 200만 톤에 달했고, 연평균 수출량은 70만 톤이었다. 이러한 미얀마 쌀산업의 양적 성장 뒤에는, 비록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할 수는 없지만, 특별농업개발회사(Special Agricultural Development Companies, SACs)와 미얀마쌀전문회사(Myanmar Rice Specialised Companies, MRSCs)를 설립하여 쌀농가에 종자를 보급하고 금융서비스와 투입재를 제공하고 계약재배방식 도입을 시도하는 등 미얀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녹두를 포함한 두류 전체 생산량은 쌀과 사탕수수 다음으로 많다. 1980년대 말부터

개량종자가 도입되면서 단위생산량은 ha당 1.28톤을 기록했고, 두류 재배면적은 1988년 73만 ha에서 2010/11년 450만 ha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녹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4.1배, 22배 증가했다. 두류는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 중의 하나로 2009/10년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5,700만 달러와 120만 톤에 달했다. 두류는 주로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목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비옥하게 함으로써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참깨, 땅콩, 해바라기, 팜유를 포함한 유지작물도 미얀마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로 전체 재배면적은 1995/96년 160만 ha에서 2011/12년 300만 ha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생산량은 70만 톤에서 290만 톤으로 증가했다. 유지작물 가운데서도 참깨가 전체 재배면적의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땅콩, 해바라기, 팜유가 각각 29%, 18%, 1%를 차지한다. 유지작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약 20만 톤의 팜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고무, 목화, 사탕수수, 황마/양마, 차/커피 등의 경제작물도 1994년 이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재배규모가 확대되었다. 2011/12년 고무 생산량은 1990/91년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목화 생산량은 9배, 사탕수수는 5배 증가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고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각각 60만 7천 ha와 300천 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1990/91년~2009/10년 기간 차 재배면적은 57천 ha에서 79천 ha, 커피는 3천 ha에서 11천 ha로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채소와 과일 재배면적도 각각 3.8배와 2.4배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작물의 생산량과 재배면적(2009/2010년)

단위: 천 톤, 천 ha

구분	작물	생산량	재배면적	구분	작물	생산량	재배면적
곡물	쌀	32,166	8,058	경제작물	두류	5,241	4,112
	옥수수	1,226	363		사탕수수	9,562	158
	수수	210	224		면화	515	359
	밀	179	104		고무	110	167
유지작물	땅콩	1,341	3,345		차	93	79
	참깨	790			양마	12	12
	해바라기	782			커피	7	11
	겨자	85			황마	1	2
	팜유	69					

주: 사탕수수는 설탕 생산용만을 포함.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

미얀마의 축산업은 소규모의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가 소비와 소득원 및 축력을 목적으로 토종 품종의 소/물소, 돼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규모는 소 2두, 물소와 돼지 각각 4두, 가금류 3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목축은 도시 근교에서 젓소와 가금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산업용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약 7배 증가하였다.

### 2.3. 농지 현황

미얀마 전체 국토에서 경작 가능한 토지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이는 34%와 37%의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낮아 1인당 경작면적은 태국, 라오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작지와 경작 가능한 황무지를 포함한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6,800만 ha) 가운데 1,760만 ha이다. 에야와디(Ayeyarwady) 구와 타닌타리(Tanintharyi) 구에서 정부가 추진한 토지개간과 상업농장 개발을 위한 개인 투자자 대상 휴경지 분할로 경작지면적은 1995/96년 890만 ha에서 2011/12년 1,190만 ha로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습지, 해안가 토지, 건조지를 포함한 경작 가능한 황무지는 530만 ha까지 감소하였고, 농지는 증가한 셈이다. 또한 32만 ha의 휴경지도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변국들에 비해 1인당 경지면적은 크지만, 대부분의 농지가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 경작되고,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2.4ha이다. 1992/93년 농업총조사와 2009/10년 가구생활여건통합조사에 의하면, 농가 수는 지난 20년간 점차 증가했다. 즉, 1992/93년 270만 호에서 2003년 330만 호로 증가했고, 2009/10년 다시 440만 호로 증가했다. 농가 수 증가는 결국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 감소로 이어졌다. 2003년까지 2.5ha를 유지하던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2012년 2.4ha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보다 여전히 큰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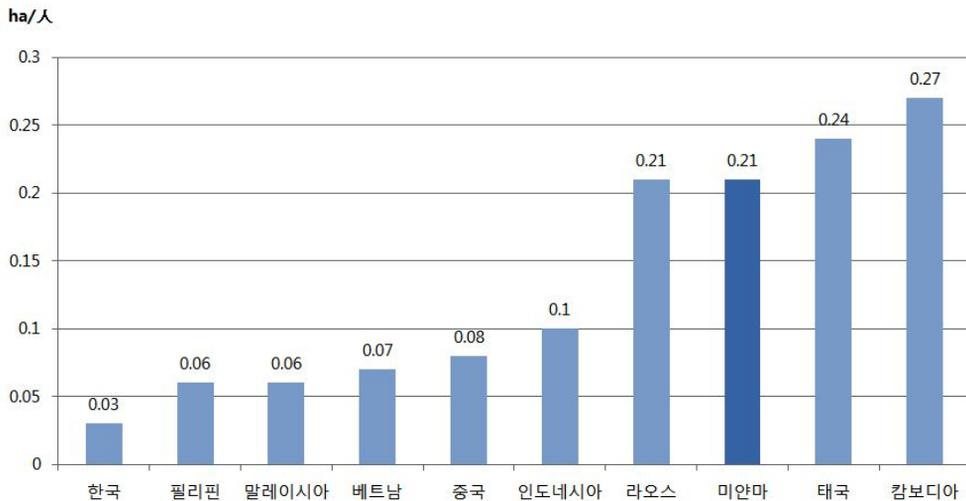
생계 및 식량안보 신뢰기금(Livelihood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LIFT)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사이클론 영향권 지역과 삼각주/해안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의 비중은 각각 68%와 72%인데 반해, 구릉지대는 26%에 그쳤다. 토지 사용권을 가진 농가들의 경지면적 분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즉, 삼각주/해안 지역 농가의 26%만이 2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2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릉지대와 건조지역 농가당 평균 경작면

적은 각각 1.4ha와 2.5ha인 반면 삼각주/해안 지역의 경우 6.7ha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컸다. 구릉지대에는 화전농이 많으며 화전용 농지의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촌의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취약 계층과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토지 사용권이 없는 농가의 비중은 2003년 30%에서 2010년 2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농촌지역 극빈층 가운데 그 비중은 3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의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바고(Bago) 구(41%), 양곤(Yangon) 구(39%)와 에야와디(Ayeyarwddy) 구(33%)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은 미얀마 곡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곡창지대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Land Core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친(Chin) 주와 샨(Shan) 주에서는 모든 농가가 생산성 높은 최소한의 농지를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가가 토지를 등록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등록하지 않고 경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림 1 국민 1인당 경작 가능 토지면적(2011)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 2.4. 농사재 연왕

미얀마 농가의 우량 품종과 비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다. 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산 비료 생산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생산비가 높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실정이다. 국산 농기계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여전히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대다수 농가는 생산성이 낮은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벼 종자의 경우 농가가 직접 채집하여 다음 해 다시 사용하거나 이웃 농가로부터 구입한다. 이러한 종자는 농자재 투입비율이 높고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 수확 및 도정 과정에서 손실률도 높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잘 조성된 쌀 생산단지의 쌀농가들조차 어떤 종자를 사용하고 어디에서 그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작물을 제외한 종자와 투입재 생산은 전적으로 농업국(DOA)의 소관이다. 1987년 인증을 획득한 주요 작물 종자의 생산과 보급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줄곧 재정 부족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DOA의 종자과(Seed Division, SD)는 주요 작물의 종자 생산체계 구축과 종자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SD는 22개의 종자 생산농장과 미얀마 쌀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3/14년 SD의 전체 예산 2,308,905 달러 가운데 종자 연구에 배정된 예산은 69,640달러에 불과했다.

주변국들에 비해 미얀마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미얀마의 비료 사용은 동남아 국가들 평균의 약 10%, 베트남의 약 7% 수준이다. 비료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비료 구입을 위한 신용서비스가 취약하고 저질의 불량 비료 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국산과 수입산 비료에 상관없이 50~100%의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되는 몇 개 브랜드를 제외하고 본인이 구입한 비료의 불량 여부를 판별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얀마 국내 비료산업은 자국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주로 요소비료를 생산하고, 칼륨비료는 수입에 의존한다. 1970년 설립되어 미얀마 석유화학회사가 운영하는 3개의 주(state) 소유 요소비료공장은 연간 약 10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자체 생산용량의 25% 이하 수준이고 국내 수요량의 약 17%에 상당한다. 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새롭게 건설되는 2개의 비료공장을 통해 국내 요소비료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기업이 수입원료를 이용해 복합비료,

유기질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다. 특히 복합비료는 거의 모든 농작물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복합비료산업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충분한 생산시설을 갖췄고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비료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93년까지 비료 가격에 상당한 보조금이 반영되었다. 보조금이 사라지자 국내 시장가격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치솟았고, 정부는 민간부문이 비료를 수입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수입세도 면제시켜 주었다. 이러한 조치와 경쟁이 없는 비료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료산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시장 진입에 매우 소극적이다.

농지가 확대되고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가 농업기계화를 장려하는 가운데 농기계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9,900대였던 경운기는 2011년 188,500대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수기는 107,800대에서 178,424대로 증가했다. MOAI의 30년 마스터플랜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기계화율을 6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차원에서 농기구와 농기계 생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부족하고 품질이 낮아 여전히 중국, 태국과 같은 주변국들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까지 MOAI는 경운기, 바인더, 탈곡기, 트레일러 및 농기계 부품을 생산하였고, 산하 농기계국(AMD)에서는 99개의 트랙터 판매장, 5개의 농기계공장 등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들 농기계공장을 산업부와 민간부문에 이양하였다. 소규모 농기계회사들은 주로 만달레이(Mandalay) 구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 3. 미얀마 농업 정책

1980년대 후반 미얀마의 자유화를 계기로 농업정책도 다소 유연화 경향을 보였다. 다른 경제부문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농업 발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강조되었고, 4대 국가 경제목표 가운데서도 첫 번째 목표가 되었다. 또한 식량안보, 수출 촉진, 농민의 소득과 복지 증진 등 3대 국가 농업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쌀 증산, 식용유 100% 자급률 달성, 수출을 위한 두류와 경제작물의 생산 증대 등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최근 최고위급의 지지 하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농업정책도 포함되었다. 2011년 6월 20일 개최된 농촌발전과 빈곤퇴치 중앙위원회에서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은 빈곤율을 16%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농업분야(곡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 8가지 개

---

발우선과제를 재차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12년~2015/16년의 5개년계획을 통해 GDP 성장률 7.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종자 생산과 종자산업 육성, 교육훈련, R&D, 상업계약영농 도입과 시장자유화 등 농업분야 5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5개년계획은 집약적인 생산을 강조하였고, 특히 2년 내에 쌀 수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경제·사회 개혁 틀 - 2012~15년 정책우선과제(Framework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 - Policy priorities for 2012~15) 에서도 기술지도 서비스와 정책자금 확대, 안정적인 수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종자 개량, 영농방식 개선, 비료를 포함한 투입재 사용의 최적화 및 병해충 통합관리를 통한 쌀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과수, 가금류를 비롯한 소규모 목축 등 소농의 영농 다각화, 저비용 소규모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 수준의 물 관리 개선, 농촌지역 소액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미얀마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에서 수립한 농업발전을 위한 30년(2001/02~2030/31년) 마스터플랜 목표는 고품질·다수확 하이브리드 품종 사용, 농업기계화 확대, 기존 관개시설 보수 및 해안시설 방조제 축조, 농업 전문가 육성, 연구개발, 기술지도와 교육훈련 실시, 농업 정책자금 농가 지원, 농업통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OAI는 특히 작물 선정에 있어 농민의 자율권 확대, 지방정부와 국제사회의 농업분야 투자 촉진, 농업 관련법과 규정 보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대다수 인구의 생계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세안국가 중에서도 미얀마는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의 1인당 농업 지출과 전체 농업 GDP에서 농업 지출의 비중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NGO 자료에 따르면, MOAI의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수자원이용국(WRUD)과 관개국(ID)을 통해 관개시설 건설에 집중되며, 2010/11년 그 비중은 약 66%에 달했다. 반면, 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종자 증식과 병해충 방지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국(DOA)의 2013/14년 예산의 비중은 4.5%에 불과했고, 미얀마의 유일한 농업교육기관인 예진(Yezin)농업대학에 배정된 예산은 0.2%에 그쳤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보다 균형적인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

표 3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농업분야 공공지출 현황(2010년)

국가	2005 PPP 농업지출 (10억 달러)	2005 PPP 1인당 농업지출 (달러)	농업 GDP 중 농업지출 비중 (%)	전체 지출에서 농업 비중 (%)
중국	211.3	155.2	24.3	10.3
말레이시아	6.3	226.6	17.7	6.7
태국	6.4	94.0	9.7	5.8
필리핀	3.3	35.1	8.0	5.9
베트남	3.3	37.5	6.7	3.9
인도네시아(*)	3.9	17.2	3.5	2.6
미얀마(*)	0.4	8.6	1.4	8.3

주(\*): 2007년 통계치 이용.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 4.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 현황

투자과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미얀마 투자기업행정이사회(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부터 2012/13년까지 농업분야(곡물)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1억 8,3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0.44%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3억3,000만 달러로 0.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 수준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곡물에 대한 국내 투자실적은 없으며, 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규모는 1,822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다소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DICA의 통계는 대기업의 투자실적만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투자실적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DICA 통계는 개별 주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외국인 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적에 포함된 수력과 석유가스 등의 비농업분야 투자일지라도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카친(Kachin) 주, 샨(Shan) 주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주에서는 비농업분야 투자와 고무, 옥수수, 쌀, 사탕수수, 자트로파, 팜유 등 농업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를 피하고 세금, 수수료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투자자가 미얀마측 특정 파트너의 협조 하에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투자도 통계에서 누락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실제로 농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투

자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과 생산성 증대 결과를 놓고 봐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표 4 농업분야(수산업 포함) 외국인 투자 실적(1988~2012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88~'00	'00/01	'04/05	'09/10	'10/11	'11/12	'12/13	합계	비중
농업(곡물)	14	20	-	-	139	-	10	183	0.44
축산물·수산물	283	-	-	-	-	-	6	330	0.79
전체 외국인 투자	7,177	218	158	330	19,999	4,644	1,143	41,842	100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미얀마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주로 주변국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① 태국의 Charoen Phokphand 기업(이하 CP)은 대중국 수출과 미얀마 내 사료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산(Shan) 주의 옥수수 생산에 투자했다. CP는 5.5억 달러를 농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옥수수 종자 생산, 쌀 농장과 도정시설, 수산물과 소 사육, 축산물가공공장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② 태국의 세 번째로 큰 고무 생산업체인 Thai Hua Rubber Pcl은 수출을 목적으로 고무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③ 경제작물개발국(DICD)과 중국의 Wuhan Kaidi Holding 투자회사는 사료용 옥수수, 사탕수수와 자트로파 재배를 위해 사가잉(Sagaing) 구에 20만 ha의 농장 부지를 확보하였다. ④ MOAI와 자국회사인 그레이트월(Great Wall)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영기업과 공동으로 바이오연료용 사탕수수, 옥수수와 카사바 생산을 위한 농장 부지를 분할 받았다. ⑤ 미얀마 설탕개발공사(Sugar Development Public Co. Ltd)는 2015년까지 1일 생산량이 400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설탕공장을 사가잉 구에 설립할 계획이다. ⑥ 싱가포르 상장기업이자 세계 제1위 팜유 가공업체인 윌마(Wilmar)는 쌀, 설탕과 유채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⑦ 대표적인 곡물 메이저인 카길(Cargill)도 식량과 사료의 수출입 기회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농산업 투자기업은 대부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과 한국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팜유와 고무 생산과 가공에 관심이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미얀마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윈난(Yunnan)성 정부는 성의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미얀마 농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관세 감축을 통해 미얀마 농산물의 중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미얀마에서의 농장 개발 등에 자국의 농민공을 적극 활용하고, 미얀마

북부지역과 윈난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과 한국은 고무와 팜유 생산을 위한 타닌타리(Tanintharyi) 구를 포함한 미얀마 남부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Felda Global Ventures Holdings 와 같은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은 대규모 고무농장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Sri Trang Co.와 Thai Hua Rubber Co.와 같은 태국 기업은 고무농장 운영과 중간 가공공장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가공공장은 태국으로부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은 다웨이 특별경제구역(Dawei SEZ)에 인접한 지역과 타닌타리 북부지역을 포함한 미얀마 남부 고무생산지구에 세워질 예정이다. 더욱이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타닌타리의 Mawdaung에 양국 간의 새로운 교역로가 2013년 개방됨에 따라 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이 더욱 용이해졌다.

베트남도 고무협회와 같은 국영기업의 주도 하에 대미얀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 4월 베트남 정부를 라카인(Rakhine) 남부지역의 48천 ha의 고무농장 분할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계속되는 집단분쟁으로 인해 폐쇄된 상태이다.

## 5.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정책

### 5.1. 토지 임차

#### 5.1.1. 토지 관련 법규

미얀마의 토지는 궁극적으로 국가 소유이며, 헌법에서는 개인의 토지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8월 농지법(Farmland Law) 과 공휴지, 휴경지와 처너지 관리법(Vacant, Fallow and Virgin Land Management Law, 이하 VFV 토지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농가가 경지를 지속적으로 경작하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면 정착 및 토지등록국(Settlement and Land Records Department, SLRD)에서 5년 후 토지 사용권이 주어졌고, 10년 후에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농가는 관개시설이 갖춰진 논의 영구 사용권을 획득한 반면 다른 일부 농가는 세금장부에 비영구적이라고 분류된 불안정한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불균등한 토지 사용권 분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0%의 토지의 등록만이 이루어졌고 고지대의 경우 등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얀마의 새로운 토지법에 근거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큰 제약 없이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 주민, 정부기관, NGO와 기업에도 토지 사용권을 부여할

---

수 있다. 개간된 토지의 사용권은 무토지 농가나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주어진다. 기업이 토지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공휴지, 휴경지와 처너지(VFV)의 사용권은 외국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FIL)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 주민, 농업 관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정부기관, NGO, 국가기관 혹은 일반 주민과 합작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 사용권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만약 토지 사용권자가 정해진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작목을 변경하거나 비농업용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사용권을 양도·임대·담보·교환하고, 외국인에게 양도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Farmland Administration Body, FAB)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를 놀려서는 안 되고,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등록과 함께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비록 중앙 FAB가 논에 쌀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를 허가했음지라도 주국인 쌀의 자급률 하락을 경계해야 하고, 지방 FABs는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작목 전환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권자는 벌금을 물어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세웠으면 철거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1년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VFV 토지는 4년 내에 경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2년 내에 분할 받은 토지를 경작해야 한다. 그리고 VFV 토지의 사용권은 정부의 승인 없이 담보·양도·매매·임대·교환이 불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토지 규모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VFV 토지법에서는 이전의 규모 상한선을 줄이고 적용 대상 범주의 수를 늘렸다. 즉, 다년생 작물과 단년생 작물은 1회 2,008ha, 분할 받은 토지의 75% 이상을 경작할 경우 2,080ha를 추가로 분할 받을 수 있고, 상한선은 20,080ha이다. 원예작물은 1,205ha, 농민과 농가 대상 20ha, 소/물소와 말 사육은 803ha, 양과 염소 사육은 201ha, 가금류와 돼지는 120ha, 내수면양식은 402ha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은 상한선이 없고, 다년생 작물과 단년생 작물이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하면 상한선을 확대할 수 있다. 마치 토지 소유권의 상한선이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인다.

토지 사용권도 기한이 있다. 토지 소유권은 요구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주어지지 만, 다년생 작물, 원예작물, 축산과 양식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은 3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후 3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구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단년생 작물의 토지 사용권은 기한이 없고, 정부 승인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작지, 휴

경지와 황무지 관리를 위한 중앙위원회의 의무와 권리 문건(44/91)에서는 모든 사업의 토지 사용권을 3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VFV 토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지 관리주체로 인해 토지 관리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당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복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 등록절차가 복잡한 것도 토지 사용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 5.1.2. 외국인 투자자의 토지 입차

1988년 이후, 미얀마 정부는 자국 토지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에 힘썼다. 문건(44/91)에 따르면, 경작지, 휴경지와 황무지의 사용권을 정부기관, 농업과 양식 목적의 합작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 제한법(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에 따른 정부의 승인이 없거나 외국투자법(FIL)의 승인이 없을 경우, 외국인과 기업은 1년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미얀마 외국투자법 관련 토지 사용권 문건(39/2011)에 의하면, 미얀마투자위원회(MI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외국 기업은 다년생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가축 사육, 내수면양식을 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을 최대 30년(최초 15년, 1회 연장 가능) 보장받

표 5 대규모 상업농의 지역별 분포

지 역	기업 수		분할 토지면적(ha)		변화율(%) (b-a)/a
	2010년	2012년	2010년(a)	2012년(b)	
Kachin state	11	17	159,159	565,174	255
Tanintharyi region	37	42	271,565	402,212	48
Ayeyarwady region	28	70	78,247	115,677	48
Sagaing region	27	54	38,670	104,924	171
Magwe region	38	52	81,945	85,507	4
Shan state	21	85	43,182	65,003	51
Bago	16	37	8,001	21,140	164
Yangon region	7	5	12,536	12,537	0
Rakhine state	14	8	1,052	3,167	201
Mandalay region	16	3	4,168	2,534	-39
Kayin state	1	2	874	1,623	86
Nay Pyi Taw	0	1	0	2,998	-
Chin	0	4	0	624	-
합 계	216	390	699,399	1,383,119	98

주: 데이터는 각 연도 3월 기준.

자료: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OECD) 재인용.

---

을 수 있다. 만약 사업 대상지가 낙후지역이나 조건불리지역일 경우 사용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관련 법규에서 제시한 것처럼, 단년생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도 토지를 무기한 임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정부기관과 합작투자할 수 있다. 물론 외국투자법(FIL)에서는 합작투자일 경우에만 외국인이 토지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MIC의 재량권 하에 승인된 내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활동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VFV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승인 사업에 대한 VFV 토지의 임차 규모 제한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단년생과 단년생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토지 임차 기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CCVfV(Central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Vacant, Fallow and Virgin Land)가 자국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를 상대로 대규모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투자자들은 대토지개발허가지구(concession)에 토지를 분할 받게 되며, 1999년 이 지역 분할된 토지면적은 90,459ha에 불과했으나, 2012년 267개 민간기업과 123개 정부기관(1,500ha)이 분할 받은 토지면적은 138만 ha에 달했다. 예를 들어, Yuzana Hukawng Valley 지구와 라카인 주의 베트남 고무생산지구의 면적은 각각 4만 ha 이상인데, 이는 CCVfV에서 분할할 수 있는 상한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면적이다. 이러한 대규모 토지 분할은 2010년부터 급증하였고, 특히 카친 주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주도의 아편 대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고무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농지의 비중은 약 5%이다.

미얀마 농업관개국(MOAI)도 농업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다. MOAI가 수립한 30년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400만 ha의 황무지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목표 중의 하나는 팜유농장 규모를 200,803ha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현재 1개 한국 기업과 2개 말레이시아 기업이 MIC의 사업 승인을 거쳐 토지를 분할받은 상태이고, 토지 임차 규모는 한국 기업 40,161ha와 2개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20,080ha이다. 또한 MOAI는 바이오연료 개발 차원에서 전국단위의 자트로파 생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주별 재배면적 목표치는 20만 ha이고, 카사바와 사탕수수 생산을 포함해 전국 총 재배면적 목표치는 320만 ha이다. 그리고 현재 12,048ha에 불과한 황마 재배면적을 40,162ha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외국

인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VFV 토지법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관대한 반면 국내 소규모 농가와 소규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재량권이 많이 개입됨에 따라 법 집행의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토지를 분할한 이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사용권을 둘러싼 불법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분할받고 4년 이내에 토지를 개발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환수한다는 조건 하에 임대한 약 100만 ha의 토지 가운데 2011년 현재 개발된 토지는 188,000ha(20%), 경작되는 토지는 121,000ha(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 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2년 미얀마 의회는 대규모 토지 분할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 환수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토지 활용을 감독하기 위한 토지 분할과 활용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자국 소규모 농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지법과 VFV 토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5.2. 외국인 직접투자(FDI)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 농업분야 투자 시 차별을 거의 받지 않으며, 오히려 내국인 투자자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농업분야 투자 기회 대부분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물론 현지 관례와 현행법, ASEAN 공동 투자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투자활동에 한해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법(FIL)에 제시된 투자 제한규정은 매우 모호하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가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에 의해 승인을 받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토지 사용기간과 면적에 있어 특혜를 받게 된다. 이러한 특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를 거칠 필요가 없는 소규모 투자사업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대규모 투자사업 편향적인 규정이다.

외국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FIC) 문건(No. 1/89)에 따르면, 농업과 수산업을 포함한 8개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며, 문건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분야 투자 제안서의 경우에도 사례별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에 농업, 수산업과 농산업 활동 대부분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분야는 단년생 작물, 약용작물, 커피, 차, 팜유, 원예작물 등의 생산·가공·판매, 가축 사육 및 육가공, 통조림 생산·판매, 동물사료, 첨가제, 동물약품 등이 포함되고, 식품산업

---

에는 비스킷, 웨하스, 국수, 마카로니, 스파게티 등의 제과·제빵식품의 생산·판매, 모든 종류의 사탕, 과자류의 생산·판매, 그 외 식품의 저장·생산·통조림 제조·판매, 식물성·동물성과 기타 물질의 기름과 지방의 생산·가공·판매 등이 포함된다.

2012년 통과된 새로운 FIL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구체적인 활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활동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투자사업 승인에 있어 MIC가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하고 있다. 첫째, MIC는 미얀마 자국민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투자액을 요하는 농산업, 곡물 도정시설과 침단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 농장운영, 선진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전통적 축산업, 전통음식 제조와 약용작물 생산 등이다. 둘째, 전통 민족문화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위생, 자연자원,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만약 MIC가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경우, 특히 소수민족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와 상충되는 활동일지라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도 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종자, 다수확 종자, 국내산 종자 생산 및 보급, 우유와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가공, 통조림 제조와 판매, 고무 생산 등은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파트너의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MOAI의 추천과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분야도 있다. 종자 생산 및 보급, 비료공자 설립 및 생산, 농약 생산과 재포장, 농업 R&D, 농기계 생산, 곡물 생산과 관련 서비스 제공, 영농 기계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 5.3. 세금우대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세금우대정책을 펴고 있으며,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요 세금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3년간 소득세 면제, ② 재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③ 수출품에 적용된 소득세 50%까지 감면, ④ 기계류와 기타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⑤ 사업 개시 후 3년 동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⑥ 자산의 미얀마 정부 귀속 방지를 위한 정부 보증, ⑦ 수익금과 투자 원금의 본국 송금 보장, ⑧ 3년까지 손실분 이월 가능 등이다.

또한 VFV 토지법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처음 몇 년간 토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작목에 따라 면제기간은 상이하다. 다년생 작물은 5년, 원예작물은 3년, 단년생 작물, 수산양식, 소·물소, 말, 양과 염소 사육은 2년, 닭과 돼지 사육은 1년이다. 정부 승인 사업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은 후 재차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세

금 감면기간은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세금우대기간이 종료 되면, 다년생 작물과 수산양식은 ha당 8.5달러, 원예작물은 ha당 5.7달러, 단년생 작물과 가축은 ha당 2.8달러의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각국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미얀마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우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규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6. 결론

농업은 미얀마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만연해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농업분야 개발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재원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미얀마 독자적인 농업분야 투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토지 임차 조건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회 확대, 다양한 세금우대조치 등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내는 구애의 손짓을 엿볼 수 있다. 주변국들은 그러한 손짓에 응대라도 하듯 농업분야 투자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식량안보와 연계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미얀마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도 옥수수, 고무, 팜유, 바이오연료 작물 등 각자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선점효과를 기대하며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농산업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미얀마와 같이 농업 발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의 외연 확대는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국내 농업 관련 기업 중 농기계업체, 농자재업체 등 일부는 이미 미얀마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농업분야 협력을 기대한다는 점은 우리 농업 관련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다.

한편, 미얀마 투자 관련 법률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거버넌스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가 존재할 수 있

---

다. 이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보 수집은 물론 미얀마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앞서 우리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인도적 차원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 국내 농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미얀마 농업분야 협력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오윤아, 박나리. 2013.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의 협력방향」. ODA정책연구 13-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울신문. 中 텃밭서 강대국 각축장으로 韓 한강의 기적 노하우 수출. 2014년 3월 20일자.
- 한국경제. 전세계가 미얀마에 돈 주지 못해 안달 ...글로벌 자본 골드러시. 2014년 3월 20일자.
- KOTRA. 2013. Myanmar-Korea Agricultural Economic Forum 2013 자료집.
- Stephen Thomsen, Mike Pfister. 2013. Investment Policy Review of Myanmar. OECD.